

KINU

제6차 KINU 통일포럼(2014.12.16)

#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제6차 KINU 통일포럼(2014.12.16)

#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인 쇄 2015년 1월  
발 행 2015년 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02-2285-0936)

© 통일연구원, 2015

#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  
제6차 KINU 통일포럼

|   |     |
|---|-----|
| 발간사 .....   | vii |
| 요약 .....  | ix  |
| I. 서언 .....                                       | 1   |
| II. 북한인권정책 추진 환경 .....                            | 3   |
| 1. 국제사회 동향 .....                                  | 3   |
| 2. 국내 동향 .....                                    | 16  |
| 3. 북한의 반응 .....                                   | 21  |
| 4. 평가와 전망 .....                                   | 33  |
| III. 북한인권정책의 목표와 방향 .....                         | 37  |
| 1. 목표와 수단 .....                                   | 37  |
| 2. 원칙과 추진방향 .....                                 | 42  |
| IV.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과제 .....                         | 52  |
| 1. 추진전략 .....                                     | 52  |
| 2. 과제 .....                                       | 60  |
| V. 결언 .....                                       | 65  |
| <부록 1>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 움직임에 따른<br>북한의 대응 전개 양상 ..... | 69  |
| <부록 2> 제2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4) .....              | 74  |



# 발 간 사

본 보고서는 2014년 12월 16일 개최된 제6차 KINU 통일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KINU 통일포럼은 통일연구원이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동 포럼은 통일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정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북한인권 침해와 관련 최고지도부의 책임성 규명을 포함한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을 전후하여 북한인권이 국제사회의 주요 정책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대북 정책에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로드맵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6차 KINU 통일포럼에서 기초발제를 해주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수정·편집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통일연구원장  
최진욱





## 요약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의제로 등장했다. 북한 지도부의 책임성 규명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접근방식 변화는 기존의 ‘감시’와 ‘우려표명’ 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하게 된 상황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인권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통일과 인권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의 보편성, 상호보완성, 불가분성 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은 자유권과 사회권, 압박과 포용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균형 있는 통합적 접근이 유용하다.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인권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실행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수렴되어 대북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은 통일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어느덧 인권, 신뢰, 민주주의가 꽃피는 행복한 통일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 I. 서언

2014년은 북한인권 문제가 단순히 ‘감시’ 차원을 넘어서 ‘책임성 규명(accountability)’ 차원의 국제사회 주요 정책의제로 등장한 한해였다. 2013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북한 내 인권침해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COI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제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북한인권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의 제로 논의하게 되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이 감시(monitoring) 차원을 넘어서서 책임성 규명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차원에서 인권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박근혜정부의 기본입장은 우선적으로 보편적 규범 차원에서 국제사회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대북정책에 인권의 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대북정책을 통해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북한인권정책과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을 유지해 왔다. 대북정책과 대북인권정책이 상호 대립하거나 부조화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선순환할 수 있도록

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권문제의 개선이 한반도에서는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과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통일을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개개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통일이란 곧 인권의 가치가 통일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통일역량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통일의 여정에서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내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개념과 인식, 정책방향 및 수단 등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인권 문제가 북핵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국제사회의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하게 된 상황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북정책에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로드맵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대북정책 및 통일의 가치와 조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은 통일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행복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전후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동향, 그리고 북한의 반응을 분석·평가하고, 북한인권정책의 목표와 수단, 원칙과 추진방향을 분석한 후 북한인권 정책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북한인권정책 추진 환경

### 1. 국제사회 동향

#### 가. 동향

##### (1) 유엔

###### (가) 모니터링에서 책임성 규명으로 성격 변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접근방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질적 변화는 북한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모니터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부분이다. 크게 단편적인 정보와 증언을 통해 인권의 심각성을 우려하던 단계를 넘어 체계적인 조사메커니즘을 통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성을 규명하려는 단계까지 접근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이런 접근방식의 변화는 다양한 배경과 맥락이 있겠지만, 우선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으나 북한 당국의 개선 의지나 인권상황의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2004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의 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과 환기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를 통해 각각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왔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처음 채택된 것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에서이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는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으며, 2004년 채택된 결의에 의해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 2006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승계한 유엔 인권이사회 체제가 발족하였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해마다 찬성하는 회원국 수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투표 없이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유엔 총회의 경우 2005년 처음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하여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2008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해마다 찬성표가 증가하여 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투표 없이 결의가 채택되었다.

한편, 국제사회는 결의 채택을 넘어서 점차 북한인권 침해상황의 체계적 조사를 위한 조사메커니즘(inquiry mechanism)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설립을 결정하였다.<sup>1</sup> 2013년 5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북한은 조사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조사위원회 활동은 차치하고, 설립 자체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현장 방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중립성·독립성·공개성 등의 원칙을 표방하며, 한국, 일본, 태국, 영국, 미국 등지에서 공청회 및 비공개 인터뷰를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7일 최종보고서(이하 “COI 보고서”라 한다)를 발표하고, 이를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

---

<sup>1</sup>-UN Doc. A/HRC/RES/22/13 (2013).

였다.<sup>2</sup> COI 보고서에서 조사위원회는 수집한 증언 및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인권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sup>3</sup>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엔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후, 적절한 방안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sup>4</sup>에 회부하는 방안과 북한 문제를 다룰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자국 주민을 보호하는 데

<sup>2</sup>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63 (2014);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통일연구원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요청으로 2014. 7. 31. 상기 두 보고서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발간하였다. 국문 번역본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www.ohchr.org)와 통일연구원 홈페이지(www.kinu.or.kr)에서 이용가능하다.

<sup>3</sup>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1945년 뉘른베르크 현장에서 최초로 규정된 이래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르완다형사재판소 규정 등 국제전법재판소 규정을 통해 그 개념이 발전되었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보다 명확하고 정교하게 정의 내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인도에 반한 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a) 살해, (b) 절멸, (c) 노예화, (d)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e)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f) 고문, (g)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입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h)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i) 사람들의 강제실종, (j) 인종차별범죄, (k)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를 말한다.

<sup>4</sup> 2002.7.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발효에 따라 개인의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설적 국제재판소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가 처벌 대상이다.



명백하게 실패한 만큼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은 국제사회에 있으며, 인도에 반한 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성 규명 조치, 인권 관련 사항에 있어 북한 당국에 대한 관여(engagement) 강화, 민간 차원의 대화에 기반한 점진적인 변화 지원, 남북한 화해를 위한 의제설정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하여 그 보호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3월 28일 COI 보고서의 결론 및 권고사항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sup>5</su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WPKC)의 결론을 인정한다; ② 북한 당국이 이러한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을 기소하는 데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책임성 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비처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사태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인도에 반한 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표적 제재의 범위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하여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고려 및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총회는 COI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총회의 경우 2014년 11월 18일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작성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이 결의안은 2014년 12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sup>6</su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북

---

<sup>5</sup>-UN Doc. A/HRC/RES/25/25 (2014).

<sup>6</sup>-UN Doc. A/RES/69/188 (2014).

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인정한다; ② COI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사항을 고려하고 북한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표적 제재의 범위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하여 책임성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 의제 채택

국제사회 동향 중 주목할 부분은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되어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2014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책임성 규명 조치를 취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압도적 표차로 채택된 후 전개된 상황이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4월 17일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3국의 제안으로 ‘아리아 방식의 회의(Arria-formula meetings)<sup>7</sup>’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로부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탈북자들의 경험을 청취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

<sup>7</sup> 아리아 방식의 회의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비공식·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유엔 헌장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사규칙(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of the Security Council)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교적 근래의 관행이다. 1992년 당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었던 베네주엘라의 대사 디에고 아리아(Diego Arria)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현안에 대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NGO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논의되었다.<sup>8</sup>

‘아리아 방식의 회의’를 주도한 3개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0개 이사국은 2014년 12월 5일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였고,<sup>9</sup> 2014년 12월 22일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었다.<sup>10</sup>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이 있으면 되는데, 투표 결과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 11개 이사국이 찬성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였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향후 3년간 언제든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sup>11</sup>

#### (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결정 및 가동 준비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동향 중 주목할 부분은 유엔이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 의지를 보인 부분이다. 북한인권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

<sup>8</sup>- Letter dated 11 July, 201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Australi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 S/2014/501 (2014).

<sup>9</sup>- Letter dated 5 December, 2014 from the representatives of Australia, Chile, France, Jordan, Lithuania, Luxembourg, the Republic of Korea, Rwanda,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 S/2014/872 (2014).

<sup>10</sup>- UN Security Council Press Release, UN Doc. SC/11720 (2014).

<sup>11</sup>-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이 되었으나 3년 간 논의되지 않은 안건은 삭제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Not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Doc. S/2010/507 (2010).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2014년 5월 30일 한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한다고 공식발표하였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4년 3월 28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대하여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에 기반한 조직(a field-based structure) 설립 등을 통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COI 보고서에서는 인권 보고 메커니즘의 업무를 알리는 것,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 인도에 반한 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기소하거나 달리 책임을 묻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을 촉진하는 것을 이러한 조직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인권사무소를 2015년 3월 서울에 개설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라)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북한에 대한 제2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실시하였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권 의무 및 약속에 관한 이행상황을 같은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검토하는 제도로, 북한에 대한 UPR은 200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제2차 UPR을 위해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권 법규 제정, 국제조약 가입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기술하

는 한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성과를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정집단(취약계층)의 권리, 준법교육, 인권분야 국제협력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국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 회원국들은 268개의 권고를 하였는데, 북한은 이 가운데 93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175개 권고 가운데 113개는 수용, 4개는 부분수용, 58개는 지속검토할 것임을 밝혔다.<sup>12 13</sup>

거부한 권고들은 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조약 등의 가입 권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촉구 권고, 북한 형사법제의 개선 촉구 권고, 성분에 근거한 차별과 계층에 따른 차별의 종식 권고, 납북자 관련 권고, 정치범수용소 폐쇄 권고 등이다. 북한은 이러한 권고를 수용 거부한 이유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북한 현실 왜곡 및 비방, 북한 사회시스템 및 국내법과의 불일치를 제시하였다.

수용한 권고들은 주로 인권조약상 의무 이행,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개선, 인권 관련 협력 및 대화 등에 관한 것이다. 지속검토하기로 한 권고들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권고, 국가인권기구 설립 권고, 사형집행 중지 권고 등이 있는데,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상황 또는 여건상 현 시점에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그 이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

<sup>12</sup>-UN Doc. A/HRC/27/10 (2 July, 2014); UN Doc. A/HRC/27/10/Add.1 (12 September, 2014).

<sup>13</sup>-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 참조.

## (2) 개별국가

### (가) 미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인권 침해의 자유권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미국 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통과시킨 이래, 2008년과 2012년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켜 그 효력이 2017년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해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sup>14</sup> 2014년 6월, 미 국무부는 ‘2014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으로 불법 입국한 북한 여성이 직면하게 되는 강제적 결혼, 노동, 매춘상황을 언급하고, 러시아, 중국, 몽골,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의 북한 노동자 강제노역 및 월급착복 또한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2014년 4월 ‘2014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13년 연속 권고하였다.

2013년 3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미국은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워싱턴 공청회 시 미국 내 시민사회, NGO, 전문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2014년 2월 COI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미국 하원에서는 3월과 6월에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은 2014년 9월 뉴욕 유엔본부

---

<sup>14</sup>-US Department of State, “Human Rights Repor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arious years).

에서 개최된 제69차 유엔 총회를 전후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였다.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언급하였고, 9월 23일 열린 북한인권 관련 고위급 회담을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고위급 회담 주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밖에도 미국 상·하원은 12월 13일 국가정보국(DNI)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실태를 조사 및 보고할 것을 명시한 정보수권법안(H.R.4681)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로버트 킹(Robert R. King)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의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킹 특사는 2014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 관련,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특히, 동년 11월 13일 북한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을 석방한 사건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의 조치로 해석하였고, 미국은 석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은 북한인권 개선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북·미 양자관계에서의 대화 및 압박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중국

중국은 국제사회가 UPR 같은 보편적 제도를 통해서 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정치화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인식과 입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반대, 최근 북한 최고위층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이 포함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반대,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정책 지속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유엔난민기구(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를 위시한 국제사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 정부의 대 탈북자 복송정책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였다. 유엔난민기구는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권을 요청하였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3월 7일, 중국은 제2차 UPR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 보고서에서 탈북자 관련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경제적 이주민 혹은 불법 이주자이며 난민이 아니라는 것과 중국이 국제법,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 나. 특징

### (1) 유엔의 북한인권 접근방식에서의 질적 변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동향을 보면, 최근 그 접근방식이 질적으로 변화되었음이 확인된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전신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동안은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등 모니터링에 치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등 책임성 규명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무력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인권침해 사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된 사실과 그러한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성 규명 조치에 대한 검토 필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반영된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에 기반한 조직의 설립을 고려하도록 촉구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개설도 결정되었다. 나아가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되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게 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접근에서 보호책임 원칙의 강조

COI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호책임 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을 적용한 것 또한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보호책임은 일반적으로는 자국 내 거주민들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그 당사국에 있지만 해당 국가가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하거나 자국민에 대하여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에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호책임은 국제법상 ‘형성 중에 있는 법’으로서 그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는 보호책임이 북한 급변 사태 시 또는 북한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의 근거로서 보호책임 논리가 명시적으로 적용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러한 보호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규명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사항에 있어 북한 당국에 대한 관여 강화, 민간 차원의 대화에 기반한 점진적인 변화 지원, 남북한 화해를 위한 의제 설정 등 보호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3)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통한 북한 변화 유도 의 성과와 한계

북한에 대해서 실시한 제2차 UPR을 보면, 북한은 국가보고서에서 자국의 인권 관련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상당수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는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제1차 UP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수용을 거부한 권고가 대부분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것이고, 정치범수용소 등 체제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 또한 확인된다.

### (4) 북한인권 개선의 다자적 접근 및 양자적 접근의 연계와 확대

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적 차원의 전략적 논의라면 개별국가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는 양자적 차원의 전략적 논의로 볼 수 있다. 주요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국가별 이해관계,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노력에 대한 인식,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정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COI 보고서와 이후의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통해 주요국의 북한인권 정책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별성이 더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다자적 측면과 양자적 측면의 연계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의 경우, 전통적인 자유권 중심의 접근법이 더욱 강화되어 정치범수용소 사안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자유권 침해실태에 대한 공개적 비판 및 자료조사 강화라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인권 이슈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탈북자 정책에 대해 여전히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면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북한인권정책의 차별성이 더욱 부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국내 동향

### 가. 동향

#### (1)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지원

2013년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이 결정되면서 한국 사회 내 정부, 시민사회, NGO 등 다양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북한이 조사위원회를 배격하면서 현장방문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축적된 자료를 보유하고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해 살고 있는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2013년 8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한국 방문과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외교부, 법무부, 통일연구원 등 유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협조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관계 기관은 부처 간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고 논의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방문을 전후로 한국 정부, 시민사회, NGO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움직임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인권 침해실태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자료 제공의 중요성, 한국의 북한인권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북한인권 침해 증언의 신빙성 확보 방안 및 정보 보호 노력,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대두되었다. 시민사회 또한 북한 민주화, 북한인권 개선, 인도적 지원 등 여러 분야의 NGO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인권침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비판 활동과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문제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인권사무소가 내년 중 서울에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전후로 다양한 차원에서 국제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침해실태 통합 네트워크 구축, 국내 정착 탈북민 전수조사 및 심층면접 강화, 개인정보 보호노력, 북한과의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가능성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제17, 18,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논의되어 온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 내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북한인권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전자는 자유권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창(advocacy)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면, 후자의 경우 사회권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원(assistance)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의 경우 그 명칭이 ‘북한인권법’이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의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영유아 및 모자보건 등 사회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다.

2013년 3월, 여당의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의 경우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유발했던 ‘북한인권재단’ 조항을 삭제하였다. 북한인권재단 조항이 야당의 반대를 받았던 이유는 재단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북한인권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심윤조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이러한 재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여·야 합의에 의해 단일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야당의 윤후덕, 인재근, 심재권 의원은 각각 ‘북한민생인권법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북한 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방식 관련, 여전히 자유권 중심의 여당과 사회권 중심의 야당 사이의 인식적·정책적 격차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2014년 초, 여·야 양당 대표 간 합의에 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다시금 한국 사회 내 북한인권법 논의가 재개되었다.

특히, 여당과 야당은 제19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10개의 법안을 각각 통합 여당안과 통합 야당안의 두 개 법안으로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야당의 심재권 의원이 2014년 4월 28일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과 여당의 김영우 의원이 동년 11월 21일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각각 여와 야의 통합법안으로서 11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2월 19일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었다.

자유권과 사회권 논쟁으로 요약되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상이한 입장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과 야당이 제시하는 인도적지원협의회, 인권정보센터 등이 주요 쟁점이다. 통합 여당안에서는 심윤조 의원안에서 제외되었던 북한인권재단 조항이 다시 부활하였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나. 특징

### (1)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전술하였듯이, 2013년과 2014년을 지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단순한 감시의 역할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책임성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참여정부 시절,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 찬성, 기권하였고, 이보다 앞선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불참, 기권, 기권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북한인권 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하였고,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은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국제사회가 감시에서 책임성 규명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표방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방한을 전후로, 국내에 북한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의 성과라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12월, 유엔 총회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위층의 국제형사법적 책임성을 거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내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된 것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논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보편성 논의에서 촉발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에 대한 한국의 협력과 공조는 책임성 규명과 관여(engagement)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현 추세와 더불어 지속·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2)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립을 전후한 한국의 역할 모색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에서 언급된 현장에 기반한 조직에 대한 논의는 2014년 5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결정에 의해 한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한국 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역할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관련 후속조치 지원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요약되면서 책임성 규명이라는 비판적 측면과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개입적 측면의 상호연계 전략이 요청되었다. 이에 한국 내 북한인권 논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즉, 일반의 기대와 달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철저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휘·감독 하에 운영되므로 수용국가의 의견 혹은 정책이 반영될 여지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리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결국,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지원방안 논의는 결국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이며, 이는 한국 정부 북한인권정책의 목표, 수단, 과정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 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는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3. 북한의 반응

#### 가. 동향

COI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북한인권 문제는 ‘책임성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국제무대의 중요 아젠더로 등장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로 보



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은 국제사회 움직임의 질적 변화를 감지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했다. 강력한 전면부인 전략, 외교적 유화 제스처,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 등의 초강경대응 주장까지 내놓은 양면을 오가는 전방위적 대응 전략을 구사했다.

북한은 COI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부당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전략을 기초로 크게 다음과 같은 대응 양상을 보여왔다. ① 보고서 전면 거부 및 무력화 시도(COI 보고서 제출 국면), ② 국제사회 요구 일부 수용 및 인권상황에 대한 적극적 해명 시도, 외교적 접촉을 통한 결의한 채택 저지(7~9월 국면), ③ 미국인 억류자 석방, 북일 납치자문제 협의 등 유화적 분위기 조성(10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 전), ④ 남북관계 파국 및 핵무력 대응 시사(10월 18일 표결 이후), ⑤ 내부 동요 방지와 체제 결속을 위한 대규모 군중대회 개최(12월 18일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전) 등으로 전개되었다.

## 나. 특징

### (1) 대외적 대응 전략

#### (가) COI 보고서 신뢰성 무력화 대응 전략

북한은 2014년 2월 17일 COI 보고서 제출 직후부터 지금까지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북한은 유엔의 조사목적이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배후 조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방식도 북한 현장방문이나 북한 당국의 설명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조사이며, 조사내용도 탈북자들을 통한 날조와 허위라고 주장하며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 (나) 북한인권 공세를 미국의 정략적 산물로 간주

북한의 공세적 담론에서 가장 일관되게 많이 등장하는 논리로 미국이 주도하여 북한인권을 문제화 및 정치화하고 있으며 ‘파렴치한 정치적 사기극’, ‘인권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대응하는 전략이다. 이런 북한 주장의 특징은 유엔이나 국제사회보다는 미국을 배후 조정자로 지목하여 비난을 집중시키고 있는 점인데, 유엔과 유럽연합(EU) 뒤에서 미국이 조종하고 있고 일본이 이를 추종하고 있다고 보는 방식이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북한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상대로 정면으로 비난 공세를 하지 않고 미국을 배후 조종자로 간주하며 비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공세 대상을 미국으로 한정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을 한반도 정전체제 또는 북·미 적대관계로 환원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문제를 북·미간의 정치적 갈등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산물로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북한이 결의안을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빚어낸 반공화국 적대행위로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한편으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상대로 정면으로 비난 공세를 펼치기 보다는 미국을 배후 조정자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는 것이 유엔 논의를 정치화하여 권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 전반을 상대로 대응할 경우 발생할 외교적 고립감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엔을 상대로 한 대응 외교에서 운신의 폭을 남겨 두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주민 설득에서도 유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미국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인권문제를 국

내적인 체제결속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상대국 인권의 취약성 공격을 통한 인권 상대주의 논리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하거나 북한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이들 국가의 인권 취약성을 공격 소재로 한 논리로 대응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물론 과거부터 미국과 한국의 인권문제를 상투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COI 보고서 이후 2014년 연초부터 급속도로 미국과 한국의 인권실태를 소재로 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역공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 비난에 대한 우회적 정당화 논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주요 비난 소재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중동지역 무인기 공습 비난, 국내 총격사건, 퍼거슨 사태, 주한미군 범죄, CIA 테러 용의자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공격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식민지 통치 만행, 역사 왜곡 등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2013년 남조선인권대책협회를 결성하고 조국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남조선인권백서’를 발표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세월호 사건, 윤일병 구타 사건, 세 모녀 자살사건 등을 공격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 (라) 인권상황에 대한 적극적 해명 전략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거부와 부인으로 일관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선전·홍보하는 전략 역시 구사하고 있다. 가령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간하여 적극

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논리를 펼치는 것을 통해 ‘우리식 인권기준’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또한 북한은 2014년 10월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초로 북한인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인권대화를 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면서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초청 의사를 밝히거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협력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것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태도로 2014년 COI 보고서 제출 이후 가장 분명하게 변화된 북한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마) 북한인권 모범적 실태 적극 소개 및 국제사회 요구 일정 수용 전략

북한은 COI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인권의 모범적 실태를 적극 소개하는 것을 통해 인권문제화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가령 북한 매체를 통해 ‘참다운 인권’이 잘 구현되고 있음을 다양한 소재와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는 방식이다. 한편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일정 정도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전략 역시 구사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인권규범에 부응한 제도적 장치나 협약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전략이다.

###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 조약명  | 상태                       | 가입/비준일<br>(통보/기탁일<br>기준) | 발효일         | 비고  |
|--|--------------------------|--------------------------|-------------|---|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가입                       | 1981.9.14.               | 1981.12.14. | 1997.8.25.<br>탈퇴 통보*                      |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가입                       | 1981.9.14.               | 1981.12.14. |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비준                       | 1990.9.21.               | 1990.10.21. |   |
|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비준                       | 2014.11.10.              | 2014.12.10. |   |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가입                       | 2001.2.27.               | 2001.3.29.  | 제2조 (바),<br>제9조<br>제2항,<br>제29조<br>제1항 유보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미비준<br>(2013.7.3.<br>서명) | -                        |             |   |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미가입                      | -                        |             |   |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미가입                      | -                        |             |   |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미가입                      | -                        |             |   |

출처: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org>)

\* 북한은 1997. 8. 2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고 탈퇴 통지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유엔 사무총장은 1997.9.23. 북한에 보낸 비망록(aide-mémoire)을 통해 규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규약으로부터의 탈퇴는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음.

가령 최근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하거나 UPR의 권고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2009년 제1차 UPR 시 상당수 권고를 수용한 이후, 2014년 제2차 보고서에서 「지진화산피해방지구조법」을 제정하고, 국가재난기구 설치 등 재난 및 안전을 인권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있어 건강·교육·식량권과 문화생활 권리를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 여기서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례적으로 ‘취약계층(vulnerable group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국가보고서를 통해 북한 역시 유엔 인권협약을 존중해 국민의 인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인권관련법을 수정·보충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력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조심스런 평가가 가능하다.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나 의정서 비준이 실제 현실에서 준수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국제사회의 규범을 북한이 의식하도록 함으로써 최악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UPR 제도가 북한 당국이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수용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인권 차원의 대화를 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증명된 것이다. 한편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이 강한 거부와 부인, 침묵으로 더 이상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된 북한의 모습은 유엔 총회에서의 달라진 행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며 유엔을 통한 적극적 대응 외교를 펼치는 방식이다. 가령 북한은 2014년 제69차 유엔 총회에 19년 만에 외무상인 리수용을 파견하여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다. 기조연설을 통해 리 외무상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및 국제기구들과 기술 협조와 접촉,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유엔의 2020년 이후 개발의제 설정작업에도 건설적으로 참가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외교적 총력전의 일환으로 이례적으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여하여 기조연설을 한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나름의 외교적 변화 모습을 보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바) 인권문제로 인한 외교적 고립화와 북·러, 북·중 관계 개선 행보

북한은 인권문제로 인한 외교적 고립화에 직면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들어 러시아와의 다각적인 외교 관계의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초강경대응전’ 선언을 하면서 러시아 편들기를 노골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인권 문제로 진정한 우방이 확인되었고 미국은 제2의 냉전에서 러시아에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한창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는 최룡해 당 비서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 정상회담, 경제협력 등은 물론 러시아 핵연구소에 북한 연구자 파견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러시아와 중국을 영원히 잊지 못할 고마운 국가로 애정을 표하기까지 했다.

외교적 고립화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대중, 대러시아를 향한 적극적인 외교 행보가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관계 확대와 효과는 미지수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푸틴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한 상황에서 과연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이나 관계 확대가 실익을 남길지는 미지수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영향력이라는 지분을 상징적으로 챙기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냉랭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심전심하는 현재 상태 이상의 모습을 굳이 보일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 문제를 놓고 비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 (2) 남북관계를 통한 대응 전략

### (가) 남북관계 파국론 및 전면적 선전포고론을 통한 위기화 전략

북한은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관계 파국론’, ‘전면적 선전포고론’, ‘핵무력 사용론’ 등 단계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며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북한은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를 ‘추동질’하였다 고 보고 “남측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인권 조작 놀음”을 하였으며 이는 “우리 제도,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14.11.22). 미국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 의 강압 통과를 전면 배격하며 이는 정치적 도발로서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주장(『조선중앙통신』, 2014.11.20)을 하는가 하면, 또한 이례적으로 인권 사안에 대해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초강경대응전’ 선언을 하기도 했다.

### (나) 핵무력 사용론 등 위협 공세를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는 전략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해 핵위협 연계 대응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4월 4일 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인권문제에 대해 핵무력 대응을 언급한 이후 발언의 강도를 높여 왔다. 북한은 핵무기는 인권을 수호하는 담보라고 주장하며, 북한 외무성 최명남 부국장과 주 유엔 북한대표부 김성 참사관 등은 북한인권결의안 제3위원회 통과 뒤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또 공식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자성남 북한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은 새로운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를 조작했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인권유린의 괴수인 미제를 매장하기 위한 판가리 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 군사적 역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영변 핵시설에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핵위협으로 연계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2014년 COI 보고서 공개 이후 처음 등장한 것으로 예의 주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인권 관련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차 핵실험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이나 미사일 발사, 한반도 위기화를 통해 인권문제의 국면 전환이나 관심 분산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핵실험의 경우 관련국에 미치는 파장이나 인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핵무력의 과시는 무기체계상 핵실험을 통한 소형화·경량화 과시, 투발 수단의 고도화 과시, 미사일 방어체계(MD, THAAD)에 대응한 재래식 무기 시위 등을 포함한다. 만약 인권문제의 국면전환용으

로 군사적 시위를 한다면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핵무기체계상의 특정 부분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위협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 이미 2014년 북한은 국제사회와 한국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관계 파국론’, ‘전면적 선전포고론’, ‘핵무력 사용론’ 등 단계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며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인권 사안에 대해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초강경 대응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무력시위나 국지적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

#### (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본격 가동에 대응한 남북관계 위기 조성 전략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본격 가동 이후 남북관계가 보다 냉각되면서 위기 조성의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국내 유치를 ‘도발’, ‘선전포고’, ‘동족 적대행위’로 간주하며, 남북관계를 더욱 엄중한 사태로 몰아가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해 왔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본격 가동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한 인권 침해 사례의 축적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내 가족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인권 의식이 북한 내부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본격 가동에 따라 남북관계와 연동한 위기 조성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 (3) 대내 대응 전략

북한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인권문제를 체제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향후 강화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비난하는 각종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평양시 군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규탄대회는 지방의 각급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6.25 미군만행’을 고발하는 신천박물관을 방문하여 인권공세에 항의하는 상징적 행보를 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에 반발하여 ‘반미사상 무장’을 독려하면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북한 대내정책 측면에서 인권문제는 사회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고, 군사시설의 국경지역 증설이 지속되고, 정보 유통의 통제를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4년 들어 진행 중인 조치들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탈북 연고자를 분류·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전파를 방해하는 제도적, 기술적 차원의 통제 조치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모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탈북자를 막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재입북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식·비공식 국경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로 인해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이 다소 느리지만 주민들 사이에 유포될 것으로 보인다.

#### 4. 평가와 전망

우선 유엔의 움직임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방식 변화는 기존의 ‘우려 표명’ 접근으로는 ‘거부전략’으로 일관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접근방식이 질적으로 변화하였고, 특히 북한인권 문제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채택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2차 UPR 결과를 보면 제1차 UPR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PR 제도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개별국가 차원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일관된 북한인권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북한인권정책은 각 국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대북관계,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입장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다자적 차원의 유엔 북한인권 개선 전략과 양자적 차원의 각국의 북한인권정책의 접점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북한인권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교적 일관된 강한 압박과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기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향후, 북·중 관계 변화, 보편적 인권개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중국의 북한인권정책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 내부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2013년과 2014년에 걸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대북압박은 한국 사회 내에서도 체계적인 북한

인권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14년의 제69차 유엔 총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및 북한인권결의 통과는 한국 내 대북정책의 핵심 아젠다로서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계기로 평가된다.

넷째,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일관되게 진행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의제화 움직임에 비해 북한의 대응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처하는데서 전략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우선 북한은 ‘인도에 반한죄’, ‘책임성 규명’,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라는 강도 높은 의제가 신속하게 국제사회 논의의 장으로 나오는 이례적인 경험을 하면서 외교적 대응 수준을 판단하는데서 내부적으로 당황스러움과 혼돈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의제화 상승 수준에 따라 강력 거부와 인권대화 시사, 유화적 제스처와 핵무력 대응 시사 등 일관된 전략 없이 갈팡질팡 국면에 따라 수세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둘째, 인권문제에서 ‘책임성 규명’이 소위 ‘최고존엄’과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 외교적 대응에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 ‘인도에 반한 죄’, ‘책임성 규명’, ‘ICC 회부’ 등은 사실상 김정은의 존재와 위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권력 핵심집단과 외교 관료들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한계선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최고존엄’은 단순히 최고지도자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과 체제 정당성을 의미한다. 북한체제 정치메커니즘상 이 부분을 용인하거나 느슨하게 대응하면서 외교적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권력 핵심집단과 외교 관료들에게는 외교적 고립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체제 내적인 권력정치에 순응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특히 김정은 정권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빈번한

엘리트 인적 교체 상황에서 관료들은 경쟁적으로 정치적 생존에 몰두하며 강경대응 태도로 공명심을 발휘하려는 속성을 더욱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최고존엄’ 관련 사안의 엄중성으로 인해 지도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 북한의 외교적 대응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2014년 한 해 동안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 보인 일관성 없어 보이는 냉온 양면의 모습, 수세적으로 국면마다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 부분은 북한 권력정치의 속성과 상황을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2014년은 북한에게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부상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처하는데서 전략적 한계와 외교적 고립화를 절감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 사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국제사회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결집된 부분은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대외관계를 유지·확장하는데서 인권문제가 높은 ‘문턱’으로 등장한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외교적 고립화가 진행되면서 김정은체제 내적 안정성에도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침해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문제화가 가시화되면서 부인하기 힘든 침해사례로 제시되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제적 움직임의 내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통제가 강화될 경우 사회적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통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압박이나 제재 효과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실행력의 제약으로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제재 중심에서 인권환경 개선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COI 보고서는 인도에 반한 죄나 책임성 규명뿐만 아니라 남북한 화해와 대화, 교류협력 등 분단 환경

의 개선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 논의나 수단에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할 경우 실행가능한 구조적 환경 개선으로 논의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현지조사와 북한 당국의 협조적인 자료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침해사례 수집 이상의 질적인 진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수집이 가능한 부분들은 북한의 부인 전략이나 비협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북한의 통제와 관리 강화, 관련국(중국, 러시아)의 수동적인 협조 등으로 외화벌이에 타격을 주는 이상의 큰 소득을 거두기 힘들 수도 있다.

### Ⅲ. 북한인권정책의 목표와 방향

#### 1. 목표와 수단

##### 가. 목표

북한인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북한 내 인권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인권,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을 포함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정책은 북한 내 인권침해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및 증진(promotion), 탈북자 보호,<sup>15</sup>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대외정책, 국내정책 전반에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전략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으로 국가폭력이 합리화되는 정치적 구조, 절대빈곤 등 경제적 요인, 특정 사회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문화심리 등을 들 수 있다. 인권의 범주는 국제인권협약에 반영된 것처럼,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분류된다. 그러나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는 인권사안들이 명확하게 상호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 상호연계성(interrelatedness), 불가분리성(indivisibility),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감안하여,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권사안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로를 강화시켜주도록 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권리

---

<sup>15</sup> 탈북자 보호정책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률』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정책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경제개발은 상호 강화(reinforcing)의 관계를 갖는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 흐름이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북한인권 문제를 특정권리 위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권리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로를 강화시키도록 하는 균형 잡힌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국내적으로 제기되어 온 자유권 우선 또는 사회권 우선 논쟁은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갈등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의 소재를 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복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는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의 인권보호, 남북 간 인도적 사안 등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구성원 개개인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도록 하고, 남북한 사회의 인권친화력을 제고함으로써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주류화(Main-streaming)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는 ‘자유, 평등, 인간존엄’이다. 이런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풍요와 자유, 자기실현의 가치를 강조하는 ‘행복한 통일’과 상호 공명한다. 다시 말해 인권의 가치와 통일의 가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 가치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조화롭게 반영되고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인권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구성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한반도 분단체제는 그동안 남북한 사회에 개인의 권리보다는 체제위협으로부터 집단안보를 강조하는 논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행복은 개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가능하다. 집단안보도 중요하지만 인간안보와 조화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접근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국가 및 사회적 성장의 기초이자 자산이라는 점에서, 정책 전반에서 한반도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역량 및 통일역량은 개개인의 인권에 기초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도 이런 관점과 맥락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평등, 인간존엄’의 실현이라는 인권의 가치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수립과 수행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주요 목표가 남북 간 신뢰형성 및 동질성 회복을 비롯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및 증진을 통한 통일역량의 강화라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인권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주류화하는 노력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고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의 주류화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국제 인권협력과

조화하면서 통일역량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차원 이상의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협력 체계 속에서 다뤄질 사안이 되었으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러한 움직임에 적극 협력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과 수행에 인권을 주류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국제사회와의 인권협력체계에도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인권정책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분리된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이들 대북 및 통일정책에 인권의 가치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의 역량으로 결집되고 남북한 사회가 인권 친화적인 사회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 나. 수단

국제사회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접근방법 및 수단은 크게 ‘압력(pressure)’과 ‘관여(engag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압력에는 책임성 규명,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비난 및 개선촉구(naming and shaming), 제재(sanction),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등이 있다. 반면, 관여에는 역량강화(인권대화, 기술협력), 지원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 및 수단은 서로 대립하거나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인권사안의 성격과 특성, 개선 단계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 및 수단이 복수적으로 채택될 수 있다. 또한 상호 긴밀하게 동

시에 연계시킬 수도 있다. 북한인권의 개선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접근방법 및 수단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 개선 논의는 주로 압력 혹은 관여 중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을 통해 전개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과 관련한 경험적 사례들에서 압력과 관여 어느 한쪽의 강조만으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고, 인권사안의 특성과 개선 단계에 따라 압력과 관여를 적절하고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적 경험 사례를 참조하고 고려하여 북한인권 문제에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권 개선 주체의 차원에서 정책 수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인권 개선 주체에는 개별국가, 유엔 등 국제기구, 인권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다. 행위 주체별로 주로 사용하는 수단을 보면, 전통적으로 개별국가와 국제기구의 경우 압력 수단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온 측면이 있고, 인권단체의 경우 관여 수단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온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개별국가와 국제기구도 관여를 통한 인권 개선 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행위 주체별로 수단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행위 주체의 성격, 역량 등에 따라 각각의 행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서 이런 주체별 제한성을 고려하면서, 압력과 관여를 단계별로 적절하게 배합하며 동시에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압박과 관여 각각에서 수단을 수준별로 다양화하고 개선 단계에 따라 이들 수단들을 상호 균형 있게 교차시키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결집하고 효율적인 협력 구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주로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단 외에도 북한 주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수단으로 정보유입, 교류협력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COI 보고서에서도 남한 정부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 과학, 스포츠, 굿 거버넌스, 경제개발 등의 분야에서 인적 대화 및 교류 기회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2. 원칙과 추진방향

### 가. 원칙

#### (1) 국제사회와의 협력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정책수단, 정책목표 등에 있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인권동향 및 인권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COI 보고서와 이후의 후속조치 논의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의 책임성 규명과 국제형사재판소 논의 등 북한인권 침해의 국제형사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전략은 책임성 규명을 통한 처벌 가능성 제기와 동시에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한 역량강화와 지원을 함께 강조하는 상호보완적 접근(two-track approach)이다.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기준과 전략을 잘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통일기반 조성 필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인권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2) 국내적 공감대 확산

모든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정책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내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져 왔으며, 북한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이 당장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북한인권정책의 조화로운 선순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가 갈등의 소재가 아닌 통일역량 구축 차원에서 상호 공감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임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한국 사회 내 통일과 북한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노력을 통해 통일한국이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3) 수용가능한 인권정책

북한인권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인권정책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거나 입장 표명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 등과 같은 제한된 수단만을 사용하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본적 원칙은 견지하되, 실행의 차원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실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압력수단 및 관여수단을 적절하게 배합하며 균형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권정책에서 균형은 북한의 국가책임을 촉구할 때는 강경하게 하면서, 북한과의 기술협력을 추진할 때는 유연하게 함으로써 세부사안 및 단계에 따라 다양한 수단들을 실용적으로 조율하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이 체제를 위협하는 전략적인 수단이라는 북한의 의심을 단계적으로 최소화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수용하여 스스로 인권 개선의 노력을 부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인권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북한에게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방향

###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

#### (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방향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대북정책으로 천명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일련의 검증된 행동을 통해 벽돌을 쌓듯이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것으로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는 점진적으로 축적된다. 신뢰는 남북 간 신뢰 뿐만 아니라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모두 포

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 추진, 진화하는 대북정책 추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 추진 등의 추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과제로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인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관계와 분리된 사안으로 보거나 남북관계에 장애 요인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과거 대북정책 추진 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가 언급되더라도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였으며, 남북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에 인권의 가치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는 남북한의 신뢰를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민족 구성원 및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맥락에 한정된 신뢰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신뢰가 민족 구성원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지속성과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상적이고 성급한 신뢰구축을 위해 물질적 유인수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 통일 인프라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은 국제사회의 상



식과 규범의 차원에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축적하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서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은 남북 및 민족 구성원 모두의 공동이익이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 남북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안녕과 복지, 번영이란 차원에서 보편적 신뢰재(信賴財: trust goods)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는데서 인권의 가치와 기준은 중요한 신뢰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의 사안이기도 하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함으로써 군사적 대결이 보다 심각하게 구조화됨은 물론 남북한 구성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핵무기를 통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평화는 인권의 가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으며, 안보 논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문제 삼는 것 이상으로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권의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한반도에 사는 구성원이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자기 권리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인권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셋째, 통일기반 구축 차원에서도 실질적 통일을 대비하는 사회적 역량 구축에서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통일역량은 인간안보에 기초하여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에 기초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통일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 및 한반도에서 인권 증진은 통일기반 구축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통일 전후를 아우르는 민족 번영과 안녕의 차원에서 민족 구성원들이 구현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인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중요한 신뢰재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은 세계 모든 구성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과 동시에 민족 구성원의 생명과 자유, 평등의 구현과도 직결된 가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통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또한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통일시대는 인권의 가치가 구현됨으로써 모두가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2일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인권과 통일과의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 (다)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모색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의 행복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인권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자유, 평등, 안녕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핵심적 가치란 점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략된 대북정책은 지속 가능성과 보편성을 갖기 힘들다. 이제 인권을 대북정책에서 분리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오히려 핵심적 가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담겨져 있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화하여 북한인권 개선이 한반도 신뢰형성 및 통일역량을 구축하는 과정과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정하고 있는 남북관계 수준에 맞춰 인권 및 인도

주의 원칙들이 구체적인 전략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월 7일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 통일을 이워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과정”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제 남북한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당위의 차원을 넘어 남북한을 매개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신뢰재(trust goods)를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신뢰재는 남북한이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가치와 수단을 의미한다. 신뢰재의 내용이 보편적일수록 형성된 신뢰는 강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신뢰재는 그 효과와 효용이 드러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당장의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약속 이행의 강한 의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신뢰재는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거나 한시적인 가치가 아닌 남북한 및 민족의 이익,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인권 가치의 구현 차원에서 재인식하고 인권이라는 신뢰재를 국제적 수준, 남북관계 수준, 국내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뢰재로서 인권의 가치는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내용에 부합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국제수준, 남북관계 수준, 국내적 수준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데,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 중요한 신뢰재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이라는 신뢰재는 남북관계 차원, 국제 차원, 국내 차원에 따라 다르게 구축될 수 있다.

## 〈남북관계 차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로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 남북한 대화채널 구축 및 기존 합의 정신 실천, 남북 간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세부과제들은 인권과 직접 관련하여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남북 간 대화채널 구축 차원에서 남북 간 인권대화, 국제기준에 입각한 인권기술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 교류협력 차원에서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남북한이 함께 만드는 인권 개선의 모델로 삼고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

## 〈국제 차원〉

국제적 차원의 신뢰재는 국제 인권규범의 준수, 동북아 인권협력 네트워크, 비핵화, 역사인식의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사회의 가장 보편적 규범 차원에서 인권의 신뢰재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준수하는 인권규범과 레짐에 따라 북한이 인권을 준수해가면서 형성되는 신뢰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여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신뢰재의 생성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동아시아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상호 협력하는 것 역시 국제적 차원의 신뢰재 생성에 해당한다.

## 〈국내 차원〉

국내적 차원의 신뢰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적 거버넌스 및 합의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국내적으로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인권이 중요한 가치이자 수단이라는 것을 국민적으로 합의하고 그것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연계되고 적절하게 구사될 수 있도록 하는데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만큼 중요한 신뢰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남북관계·국제·국내 각 수준별 인권의 신뢰재는 공간적 범주(scale)와 신뢰재가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의 수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범주에 해당한다. 이들 수준별 인권의 신뢰재는 동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구축의 속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우선 순위나 중요도의 우열이 있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 (2) 평화통일지향형 인권정책

북한인권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지향과 조화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인간존중의 가치가 명시되어 있듯이,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권적 가치인 비차별, 자유, 평등, 인간존엄 등이 존중(respect)되고 실현(fulfil)되어야 하며, 인권침해를 예방(prevent)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표명하되 북한인권 개선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이 증폭되고 평화와 통일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행복한 통일’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해 ‘통일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권적 가치는 이제 남북한의 ‘통합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북정책에서 추진해 온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공존’을 넘어서 남북한이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통합역량’을 인권의 가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권리와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적 가치가 남북한의 통합역량의 토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 침해의 예방(prevention) 및 인권의 보호(protection)와 증진(promotion)이 평화통일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투영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과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와 인권 개선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V.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과제

### 1. 추진전략

#### 가.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 조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갈등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권이 국제사회가 수용하는 보편적 가치로 국가주권을 넘어선 국제사회의 보호책임과 함께 정치적인 차원에서 개입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책임성 규명 차원의 국제형사처벌, 제재 등 강력한 인권압력과 함께, 인권대화 및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를 위한 기술협력 등 관여(engagement)의 병행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지도부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EU 국가들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유럽 민간단체들도 대북지원 사업을 주된 관여(engagement) 수단으로 지속시키고 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인권 문제 접근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peace), 화해(reconciliation)와 통일(unification)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하고 일관된 접근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인권 개선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국제기구의 권고를 형식적이거나 수용하는 한편 자신들의 인권 개

선 노력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국내 인권단체들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인권단체들과 다양한 차원에서 함께 조명하고 개선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국내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내 공통의 인권사안을 논의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지역인권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역협의체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집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구성원 사이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남북한 당국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 당국 간 대화는 필수적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인권의 가치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며,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이 남북관계에 적절하게 투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 나.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실행가능성을 감안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정책목표가 단순히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대북, 대외, 국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권문제가 국제관계,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 국내정치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 가해자에 대한 국제형사소추 논의 및 국제 공동체의 책임 등 국제사회의 압력은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 없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촉구가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탈퇴 선언 및 의무 불이행 등 파행적인 행동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을 외부의 정치적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사회통제 강화하여 오히려 인권침해 환경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이 단순히 정치적 압력의 사안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건설 및 국제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관련 법률 및 제도 마련에서 실행가능성 및 파장을 감안하여야 한다. 정책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 변화를 통한 인권침해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로 인권 개선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인권가치가 보편적이지만, 그렇다고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인권의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관된 정책추진이 중요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원칙 적용의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답론으로서 인권은 매우 광범위한 권리들을 포괄하는 것이지만, 정책추진과정에서 인권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관계 현실에서 ‘북한인권’이라는 용어의 정치성을 감안하여, ‘구성원’에 대한 사람대접, 인간존중이라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용어들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활용되는 ‘인간안보’, ‘민생’, ‘생명’ 존중이 인권을 지칭하는 용어로 병행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헬싱키프로세스에서 바스켓Ⅲ로 다루어진 인권의제가 인적접촉, 정보교류, 문화 및 교육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적접촉도 가족재결합 및 상봉추진, 국적이 다른 국민들의 결혼제한 조건 제거, 여행조건 개선이었다.

#### 다. 인권우선 접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구들이 공동의 ‘인권우선(Rights Up Front)’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인권존중 증진(Promoting respect for human rights)이 유엔의 핵심목표이다. 유엔헌장과 총회결의안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사무총장과 유엔기구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기준들을 실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유엔기구들은 도덕적 권위, 외교력 및 접근성 등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인권을 유엔의 활동에 통합하며 모든 구성원이 인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이해한다.
2. 회원국들에게 심각한 인권 및 인도법 위반으로 위협에 처해질 위험이 있거나, 처해진 사람들에게 솔직한 정보를 제공한다.
3. 현장에서 일관성있는 전략을 수행하고, 유엔이 일치된 태도로 대응하여 협상력을 제고한다.
4. 본부가 현장과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고체계를 명확하고 간소하게 한다.
5. 인권기관들의 조정역할 제고 등을 통한 유엔의 인권역량을 강화한다.
6. 심각한 인권 및 인도법 침해 정보관리를 위한 유엔의 공동시스템을 개발한다.

인권우선 전략은 인권적 우려들이 모든 북한 관련 활동에서 효율적으로 고려되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인권가치를 정책전반에 주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라. 단계별 접근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인권정책은 현실적으로 단계별 접근이 불가피하다. 다음과 같이 1단계에서는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2단계에서는 민생 인프라 구축의 본격화, 3단계에서는 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다.

### **<1단계: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1단계에서는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추진되어

야 한다. 오랜 분단을 통해 가족 이산이 지속된 현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상봉 이후에도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남북 당국 간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양 사회 구성원들이 분단극복 및 통일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남북적십자사가 전면적인 생사확인 작업을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물론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한 전수의 명단을 중심으로 생사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사확인 작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남북한이 재난관리 공동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생사확인이라는 인권적 목적과 재난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능력 향상이라는 인도적 목적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차별적인 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인권 차원의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적 참여나 비차별에 기반을 둔 농업·경제·무역정책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시장경제 활동이 합법화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인도적 지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포함한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도지원단체들의 북한에서의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북한 당국이 대화를 통해 국내 인도지원단체들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건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 대북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된다면, 이는 곧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인권 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는 자체적인 인권 개선 노력과 연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과 인도적 대화 추진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은 새로운 생명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000일 패키지사업은 ‘흡수통일’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서서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의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잘살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단계: 민생인프라 구축 본격화〉**

2단계에서는 시범사업들을 통해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과의 협의로 상하수도, 화장실, 지역 진료소 등 북한 주민의 생활과 연

계된 기본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산부 및 영유아뿐만 아니라 해당 연령층에 속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모자 1,000일 패키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합농촌단지 이행 등 민생에 직접 연계된 인프라 구축 노력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개발 차원의 인력교육 등을 추진하여 인적자본(human capital)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력교육에는 기술적 차원의 내용과 함께 국제사회가 표준기준으로 제시한 권리 규정 및 기본가치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지원을 사회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조능력을 배양하고, 권익옹호와 지도력·관리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외부에 의해 주도되는 방식보다는 수원국인 북한이 주인 의식(ownership)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단계: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본격화〉

남북한 신뢰관계가 성숙된 3단계에서는 대북지원이 경제협력사업과 연계되도록 하고, 남북 간 인권대화 및 인권기술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 의지가 뚜렷하게 정책적으로 드러나고 실제적인 개선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야만 한다. 이는 국제사회가 무역거래에서 ‘인권’의제를 주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근로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들을 예방하여야 인권침해 기업으로서 무역상의 제재 및 소비자 불매운동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제

관계에서 ‘인권’은 국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상의 수익과 곧바로 연계되어 있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관심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련국들이 북한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현대판 노예노동’으로 판정하게 된다면, 노동자 파견사업은 중단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임금직불 및 일상생활 감시 폐지 등 국제 근로기준에 맞는 노동환경 마련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 2. 과제

### 가. 북한인권정책 거버넌스 구축

한국 정부가 일관된 북한인권정책을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북한인권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국내외 민간단체, 유엔기구 및 국제기구, 관심있는 개별국가 등이 모두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부처와 관련하여서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주무부처로 설정되었으나 총괄조정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인권정보 수집(실태조사 민간용역 발주)과 국제협력(외교부)면에서 주무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가치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정책이 사안별 실태변화에 근거하여 보완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외부에서 수집된 북한인권정보를 취합하거나, 정책의 대변 혹은 전달

창구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추진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 전략이 대북, 대외, 국내정책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하며,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현안 대응 차원의 접근보다는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부처간 정책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부처 간 역할 경쟁의 문제들도 이러한 정책협의 부족으로 초래된 것이다.

통일정책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나갈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 북한인권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상설 총괄부서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대북, 국내, 대외 정책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인권단체, 관련국 및 국내외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이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기구와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실태 조사, 홍보, 권고안 이행검토 등이 이루어질 것이란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유엔 차원의 활동은 독립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엔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활동이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분야별로 행위참여자들의 역할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외탈북자 보호문제 등 외교적 협상이 중요한 사안은 외교부 주도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반면 북한의 인



권역량 강화사업은 통일부가 주도하고 외교부가 협력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 나. 남북한 인권대화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남북한 인권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추진하였다. 북한 인권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한 미국과 일본도 사실상 북한과 인권대화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방북하여 식량지원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일본과 북한은 납치자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한국 정부도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쟁 중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남북자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남북한 간에 비록 ‘인권대화’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인권적 관심을 다루는 대화는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가 ‘분단으로 인한 가족권’ 침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이를 보완하여 인권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남북한 인권대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남북한 인권대화가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체제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남북한 공동의제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논의를 위한 신뢰형성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한다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인권협의체들과 함께 공동의 관심 사안을 논의하는 느슨한 협력을 통해 대화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과 가까운 몽골이나 인도네시아가 중재하는 다자적

접근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자적 네트워크에 북한담당자, 연구자,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북한의 인권역량 제고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UPR 국가보고서 및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통해 인권관련 기구들과 단체들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남북한 인권대화는 북한이 강조하는 최근의 인권노력들을 중심으로 보건의권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북한의 국가의무(responsibility)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사안별 인권실현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북한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특정보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설정한 인권의제에 대한 상호검토 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인권대화를 통해 인권이 단순히 체제위협적인 사안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국가들이 UPR 권고 이행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도 지역인권협력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아시아 UPR 권고이행을 주제로 매년 워크숍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 다. 남북한 인권기술협력

북한이 제2차 UPR에서 수용한 권고사안들을 중심으로 남북한 인권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험을 토대

로 북한이 국가인권기구를 수립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북한제도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북한이 국가인권기구 도입을 통해 인권관련 제도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권고되어 온 인권기준들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국제적인 교정시설의 인권기준 등을 감안하여 교화소의 시설운영 및 규칙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교정인력의 인권교육 실시를 지원하는 것도 남북한 인권 기술협력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이 글로벌문제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간에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법치(rule of law)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법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특별경제구역 등을 운용하기 위한 법률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서 인권분야 기술협력이 남북한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 V. 결론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의제로 등장했다. 북한 지도부의 책임성 규명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접근방식 변화는 기존의 ‘감시’와 ‘우려표명’ 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의제화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개념과 인식, 정책방향 및 수단 등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북정책에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로드맵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분리된 사안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및 체계적 북한인권정책 수립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개선 논의는 박근혜정부의 행복한 통일 논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통일시대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어떠한 위치를 점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인권정책의 목표, 대상, 주체, 전략, 과제 등 다양한 안건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함께 조화롭게 선순환할 수 있는 북한인권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지하고 있듯이,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통일을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임을 제시한 바 있다. 개개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통일이란 곧 인권의 가치가 통일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통일역량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통일의 여정에서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내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가치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은 행복한 통일의 달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인권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과 인권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과 수행에 인권을 주류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 개선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이것이 국제사회와의 인권협력체계와도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이 남북한 통일 및 통합의 역량으로 결집되고 남북한 사회가 인권 친화적인 사회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인권의 보편성, 상호보완성, 불가분성 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은 자유권과 사회권, 압박과 포용의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균형 있는 통합적 접근이 유용하다. 이는 기존의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었고 실제 국제사회는 북한 최고위층의 책임성 규명과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이라는 개입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의제 채택을 정점으로 논의가 이렇다 할 진전을 못 이루고 제자리 걸음을 하며 구체적인 실행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행전략의 현실성은 더욱 높아진다. 일정 부분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고(naming) 망신 주는(shaming) 상징적 성과는 거둘 수

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태도를 감안하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향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의 추진방향은 남북관계의 부침 혹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제도적 틀 속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인권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실행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전략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수렴되어 대북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은 통일과정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어느덧 인권, 신뢰, 민주주의가 꽃피는 행복한 통일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 〈부록 1〉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 움직임에 따른 북한의 대응 전개 양상

|     | 북한인권 문제 전개  | 북한 대응 조치  |
|-----|---|---|
| 12월 | COI 보고서 발표(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북한대표부, COI 보고서 전면 거부(17)</li> <li>• 외무성, COI 보고서 배격, 허위날조 자료 주장(21)</li> </ul>  |
| 3월  | 유엔 인권이사회, COI 보고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출, 책임자 규명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중앙통신, 미국 인권상황 비난(3-7)</li> <li>• 국방위원회, 인권문제 제기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일환으로 보고 미국을 비난(14)</li> <li>•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세계인권보고서' 발간 및 북한 비판 성명 주한미국대사 발언 비난(17)</li> <li>•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 유엔 인권위원회 COI 보고서 공방 중 퇴장(17)</li> <li>• 노동신문, 미국의 '세계인권보고서' 발간 비난(23)</li> <li>•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COI 보고서 관련 미국 강경비난(25)</li> <li>• 북, 유엔 인권이사회 UPR 국가보고서 제출(26)</li> <li>• 외무성,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전면 배격(31)</li> </ul> |
| 4월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 진행(17) (상임이사국 중국, 러시아 불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인권 압박 지속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시사(4)</li> <li>• 외무성, 안전보장이사회 북한권 논의는 체제 허물려는 것(18)</li> <li>• 조평통·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유치는 체제대결 선전포고(21, 23, 24)</li> <li>• 조선중앙통신, COI 커비 위원장 비난(22)</li> <li>• 조국통일연구원·남조선인권대책협의회, 남조선인권백서 발표(29)</li> </ul>   |
| 5월  | 유엔 인권이사회 UPR 보고서 마련(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인권이사회 UPR 권고안 중 81개 수용 입장 표명(1)</li> <li>• 노동신문,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남한 비난(6)</li> <li>• 노동신문, 미국 인권상황 비난(27)</li> <li>• 북일 납치자 문제 국장급 회담 개최(26-28)</li> </ul>   |



|    | 북한인권 문제 전개                         | 북한 대응 조치   |
|----|------------------------------------|--|
| 6월 |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10) 후속조치 적극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유엔대표부 '미국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제안서' 유엔 공식문서 등재 요청(4)</li> <li>• 노동신문, 북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정치적 도발(4)</li> <li>• 조평통 대변인 성명, 북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비난(10)</li> </ul>  |
| 7월 | COI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신문, 미국의 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비난(22)</li> </ul>   |
| 8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무성 대변인, 미국 퍼거슨시 발생 인종차별문제 관련 소요사건을 거론하며 미국 비난(26)</li> </ul>   |
| 9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평통 서기국, 국가인권위 북한인권기록전시관 설립 비난(5)</li> <li>•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서명(9)</li> <li>• 강석주 유럽 순방(6-16) 중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만나 EU에 북한인권결의 내용 완화 요구(9-10)</li> <li>• 조선인권연구협의회 인권보고서 발표(13)</li> <li>• 북한인권 장관급 회의에 북한이 참석 요구했으나 거부(23)</li> <li>• 박근혜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24)</li> <li>• 조평통·국방위원회·노동신문, 박 대통령 기조연설 비난(26-28)</li> <li>• 북, 제69차 유엔 총회에 리수용 외무상 파견 및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인권분야 협조·접촉 용의 표명(28)</li> </ul> |

|     | 북한인권 문제 전개                       | 북한 대응 조치   |
|-----|----------------------------------|--|
| 10월 | 유엔, EU가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비공개 회람(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핵심 실세 인천아시아게임 폐막식 참석(4)</li> <li>•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관련 설명회 및 '거짓말과 진실' DVD 배포(7)</li> <li>•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자체 인권결의안 초안 작성 후 비공개 설명회 개최(15)</li> <li>•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인권빌미 적대세력에 강경 대처 표명(17)</li> <li>•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인권토론회 협의 서한 발송(17)</li> <li>• 북, 미 외교협회에서 인권보고서 설명회 비공개 개최(20)</li> <li>•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장일훈 차석대사, 김정은 ICC 회부 시 대응조치 경고(20)</li> <li>•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석방(21)</li> <li>•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자성남 대사 및 외무성,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토론회 참석(22)</li> <li>•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장일훈 차석대사, 북한인권 실태 현장실사 논의 가능성 표명(22)</li> <li>• 국방위 성명, 미 인권공세 강력대응 천명(25)</li> <li>• 디루스만, 유엔본부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과 방북문제 논의(27)</li> <li>• 북, 대북전단 빌미, 압박 강화(27)</li> <li>• 북, 일, 평양서 납치자문제 협의 개시(28-29)</li> <li>• 외무성, EU 인권결의안 채택 시 예측할 수 없는 결과(30)</li> <li>• 외국인 페이스북, 트위터 접속 전면 차단(30)</li> <li>• 요덕수용소 폐쇄 소식(30)</li> <li>• 북, 인권결의안 수정 시 EU인권대표 3월 방북 초청장 발송(30) → 디루스만 수정 조건 방북 거절(31)</li> </ul> |

|     | 북한인권 문제 전개   | 북한 대응 조치  |
|-----|--|---|
| 11월 | 유엔 총회 제3위원회<br>북한인권결의안 채택(18)<br>(찬성 111, 반대 9, 기권 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인권공세 가담 시 남북관계 파국, 모든 대화 거절(2)</li> <li>• 외무성, 미국과의 인권·핵 대화 없겠다는 입장 표명(4)</li> <li>• 케네스 배, 매튜 토드 밀러 석방(8)</li> <li>•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되자 결의안 거부 의사 표명(18)</li> <li>•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 EU인권특별대표·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협조 의사 철회(19)</li> <li>• 외무성 공식 성명,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정치적 도발', 핵심협 통한 전쟁 억제력 강화 주장(20)</li> <li>• 조평통 서기국, 인권결의 추동한 남한 전면 선전포고(22)</li> <li>• 국방위 성명, 인권결의안 전면 배격 초강경대응전 주장(23)</li> <li>• 인권결의안 불수용 의사 반기문 총장에 서한 전달(24)</li> <li>• 조선중앙통신, 인권결의안 인권 정치화 위험한 전례(24)</li> <li>• 민화협 대변인, 남한의 북한인권결의 가담 선전포고로 규정(24)</li> <li>• 김정은, '6.25 미군만행 고발' 신천박물관 방문(25)</li> <li>• 유엔인권결의안 비난 평양시 대규모 군중대회(25)</li> <li>• 유엔인권결의 비난 규탄대회 지방으로 확산(26)</li> <li>• 노동신문, 미국의 인권공세에 핵무력으로 대응 시사(26)</li> <li>• 외무성 대변인, 미 인종차별 시위 미국은 인권유린의 표본국(28)</li> <li>• 조선인권연구협회 상보, 미국이 빚어낸 반공화국 적대행위(28)</li> <li>• 조선중앙통신, 북한인권결의 주도 일본 비난 및 보복 다짐(28)</li> <li>• 노동신문, 인권결의안 반발 반미사상 주장 독려(29)</li> </ul> |

|     | 북한인권 문제 전개                        | 북한 대응 조치  |
|-----|-----------------------------------|---|
| 12월 |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 예정(18-19 처리 전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결의안 비난 군민대회 연속 개최(1)</li> <li>• 유엔 사무국,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자성남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북한인권 상황 ICC 회부 반대 내용의 서한 및 첨부문서 홈페이지 게재(1)</li> <li>• 노동신문, 남북대화 파국은 남한 책임(2)</li> <li>• 노동신문, 인권결의안지지 일본·EU 비난(2)</li> <li>• 노동신문,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일본 연일 비난(3)</li> <li>• 노동신문, 인권결의 EU 독자성 부재 연일 비난(4)</li> <li>• 외무성 대변인, 북 인권문제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은 미국의 침략 명분용 강조(9)</li> <li>• 노동신문,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전 미국의 압력 행사 주장(9)</li> <li>• 노동신문,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비난(10)</li> <li>• 외무성 대변인, 미국 CIA 고문실태 관련 보고서 공개 거론하며 유엔이 미국의 인권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13)</li> </ul> |

## 〈부록 2〉 제2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2014)

### o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 및 북한의 반응

| 거부  | 수용   | 부분수용 | 지속검토 | 합계   |
|-----|------|------|------|------|
| 93개 | 113개 | 4개   | 58개  | 268개 |

#### 1. 권고 수용 거부: 93개

|         |  |
|---------|--|
| 124.91  | 사형 및 처형 방식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 (이탈리아)   |
| 124.93  | 자의적, 공개 및 비공개 처형의 방식을 중지할 것 (칠레)   |
| 124.102 |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의 구금 시설 내 접근을 허가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되었거나 강제자백과 관련된 모든 사례들을 검토하여 피해자에 보상하는 것을 고려할 것 (멕시코)                 |
| 124.103 | 구금시설에서의 고문과 학대 관련 지적에 대해 변론할 것. 또한 죄수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 및 기타 국제 감시인원이 즉시, 완전히 또한 모든 구금장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 할 것 (헝가리) |
| 124.104 | 구금조건을 가능하고 평가하여 이를 국제규범과 표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 특별보고관 및/혹은 승인을 얻은 독립적 인도주의 단체들을 초청하여 교화 시설 및 기타 교정, 구금시설을 방문케 할 것 (벨기에)                      |
| 124.123 | 수도 출입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국가의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법 제62조를 철폐하여, 그 국가를 떠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모든 제제를 해제할 것 (멕시코)                                      |
| 124.131 | 언론의 자유와 관련 권리 및 이주의 제한을 중지할 것 (보츠와나)   |
| 124.132 | 독립적 신문매체와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할 것; 공민이 인터넷과 국제 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강제적 세뇌교육을 폐지할 것 (호주)  |
| 124.144 | 주민들의 적절한 식량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식량시장 개혁을 허용할 것 (그리스)   |
| 124.155 | 국제법에 따라 심도 있는 법률 개혁을 진행하여 공민들의 자유 시장활동을 합법화 및 지지하고, 개인경제활동으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 (독일)   |

|        |   |
|--------|---|
| 125.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89년 집단 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사실을 고려하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및 그의 의정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M) 및 로마규정 등 주요 인권조약의 체결국이 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 (가나) |
| 125.2  | 로마규정에 가입하여 국내법을 그에 완전히 일치되게 정비하고, 조항을 편성할 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적시에 충분히 협력할 것 (네덜란드)  |
| 125.3  | 로마규정에 가입하여 국내법을 그에 완전히 일치되게 할 것 (몬테네그로)   |
| 125.4  | 로마규정에 가입하여 국내법을 그에 완전히 일치되게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것 (에스토니아)   |
| 125.5  | 로마규정에 가입하여 국내법을 그에 완전히 일치되게 정비하고, 조항을 편성할 시 조사와 기소 부문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적시에 충분히 협력하며,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것 (스웨덴)   |
| 125.6  | 반인도범죄에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충분히 협력할 것 (그리스)   |
| 125.7  | 로마규정에 가입하여 국내법을 로마규정 하의 모든 의무와 완전히 일치되게 할 것 (라트비아)  |
| 125.8  |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반민족·국가행위 및 경제활동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채택할 것 (벨기에)   |
| 125.9  | 형법을 수정하여 반민족·국가행위 등과 같은 일반적인 죄목은 폐지할 것 (스페인)  |
| 125.10 | 헌법상의 연좌제를 폐지할 것 (프랑스)   |
| 125.11 | 기구 개혁을 진행하여 분권을 허가하고, 독립된 사법부문, 다당제 및 국가, 지역, 지방의 각급 공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민의회를 위해 조건을 조성할 것 (스페인)  |
| 125.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COI)와 본 보편적 정례인 권검토(UPR)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건설적으로 고려할 것 (이탈리아)   |
| 125.13 | 유엔의 인권매커니즘 특히 인권이사회의 인권조사위원회와 협력할 것 (코스타리카)   |
| 125.1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권침해 사항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즉시 행동을 취할 것 (뉴질랜드)   |

|        |   |
|--------|---|
| 125.15 | 정당한 절차의 박탈, 구금제도의 개혁, 사형제 및 납북자의 본국 송환문제 해결 등의 권고를 포함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오스트리아)  |
| 125.16 |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라트비아)   |
| 125.17 |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연구하고 이행하기 시작할 것 (에스토니아)  |
| 125.18 |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특히 인권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행할 것 (한국)  |
| 125.19 | 인권조사위원회와 인권이사회 제25/25호 결의의 호소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특히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침해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재할 것 (독일)   |
| 125.20 | 해당국의 인권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명시된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미국)                         |
| 125.21 |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를 즉시 제지할 것. 보고서는 많은 부분들이 반인도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프랑스)   |
| 125.22 |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인권이사회 심의 후 통과된 결의에서 제기된 권고사항들과 같이 정치범수용소 및 납북문제를 포함 인권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일본)  |
| 125.23 | 인권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 권고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 (포르투갈)  |
| 125.24 |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을 이행할 것 (슬로베니아)   |
| 125.25 | 사상, 언론 및 종교의 자유침해, 여러 형식의 차별, 이주 및 거주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자의적 구금과 고문 및 처형, 타국으로부터 행해지는 납북과 강제실종을 포함해 인권조사위원회가 기술한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 (아이슬란드) |
| 125.26 | 독립적인 인권 감찰관의 해당국 방문을 허가하고, 특별절차와 협력하며,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변론할 것 (체코)  |
| 125.27 | 인권조사위원회, 유엔특별절차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협력할 것 (포르투갈)  |
| 125.28 | 인권이사회 모든 특별절차에 초청을 보내고 협력프레임 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의 당국 방문을 허용할 것 (우루과이)   |

|        |  |
|--------|--|
| 125.29 |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인권조사위원회와의 협력을 포함해 유엔인권매커니즘과 충분히 협력할 것 (우크라이나)   |
| 125.30 | 유엔, 인권이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과 충분히 협력하고, 특별보고관의 당국 접근을 허가 할 것 (그리스)   |
| 125.31 |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 특히 그가 바로 제한 없이 해당국, 교화소 및 정치범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스위스)                                 |
| 125.3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 유엔인권매커니즘과 충분히 협력하여 그들이 제한 없이 해당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리투아니아)   |
| 125.3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의 해당국 접근을 허가하고, 유엔인권매커니즘의 기술적 협력을 수용할 것 (북아일랜드)   |
| 125.3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의 해당국 접근을 허가할 것 (스웨덴)   |
| 125.3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 및 모든 특별절차를 수행하는 책임자는 자유롭게 해당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 (프랑스)   |
| 125.3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고, 그에게 해당국 방문 초청을 보내 방해받지 않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오스트리아)   |
| 125.3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과의 충분한 협력을 포함해 유엔인권매커니즘과 인권이사회와의 특별절차와 협력할 것 (루마니아)   |
| 125.38 | 유엔인권매커니즘과 특별절차,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과 충분히 협력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접촉할 것 (브라질)   |
| 125.39 | 특별절차의 임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국가 전체를 방문하겠다는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특별절차와 기타 인권매커니즘과 충분히 협력할 것,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과 충분히 협력할 것 (슬로베니아) |
| 125.40 | 국가가 지지하는 성분체제에 기반한 차별을 중지하고, 여성에 대한 보편적 차별을 중지할 것 (미국)   |
| 125.41 | 성분제도에 근거해 조부모의 범행으로 인한 공민의 차별을 중단하고, 사실상의 양성평등을 장려할 것. 또한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행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 (호주)                             |



|        |  |
|--------|--|
| 125.42 | 성분제도와 관련된 모든 위험적인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집단범행에 기초한 처벌을 중단할 것 (체코)  |
| 125.43 | 소위 '핵심', '동요' 및 '적대 계층' 및 정치적 관계에 기초한 공민에 대한 차별을 중지할 것 (캐나다)                                     |
| 125.44 | 사형 및 공개처형을 폐지할 것 (그리스)   |
| 125.45 |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기술된 제도화된 처형 및 실종정책을 중지할 것 (스페인)   |
| 125.46 | 납북자 가족에게 그들의 생사여부와 행방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것 (그리스)  |
| 125.47 | 납북자 가족에게 그들의 생사여부와 행방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납북자 및 그 자녀가 자신의 고국으로 즉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할 것 (헝가리)            |
| 125.48 | 납북자, 전쟁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를 진지하게 처리할 것 (한국)   |
| 125.49 | 구체적 시간 틀을 설정하여 납북자들의 본국귀환을 포함하여, 납북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 (일본)                          |
| 125.50 | 납치된 모든 외국인과 그 자녀들이 자유롭게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할 것 (슬로바키아)   |
| 125.5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강제로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을 송환하고 유관 당국과 친족에게 이들 행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 (멕시코)      |
| 125.52 | 납북자의 국적이 어떠한가를 막론하고 납치행위를 중단할 것 (칠레)   |
| 125.53 | 강제노동과 식량배급의 박탈을 포함해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고문과 기타 가혹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 (리투아니아)                           |
| 125.54 | 정치범수용소를 즉시 폐쇄할 것 (캐나다)   |
| 125.55 |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그리스)  |
| 125.56 |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구금되어있는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리투아니아)  |
| 125.57 | 양심범(prisoner of conscience)들이 구금되어있는 모든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political prisoners)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체코) |
| 125.58 | 모든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즉각 폐쇄하고 연좌제로 인해 수감되어 있는 친족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슬로베니아)                  |

|        |  |
|--------|--|
| 125.59 |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성분제도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할 것.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포함 인권매커니즘과 협력을 기울일 것 (한국)  |
| 125.60 |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연좌제로 인해 수감되어 있는 친족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범들을 석방할 것 (오스트리아)  |
| 125.61 |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연좌제로 인해 수감되어 있는 친족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 (스웨덴)  |
| 125.62 | 수용소의 폐쇄를 즉시 진행할 것 (스페인)  |
| 125.63 | 정치범수용소 (관리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프랑스)  |
| 125.64 |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즉시 허물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또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것 (미국)   |
| 125.65 |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허물고 강제노동의 관행을 철폐할 것 (독일)  |
| 125.66 |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해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 또한 정치범수용소를 철거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이스라엘)   |
| 125.67 |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 (뉴질랜드)  |
| 125.68 | 노동교화소라고 불리는 시설 내의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해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러한 시설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모든 수용소를 철거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행적을 알 수 없는 실종자의 생사를 명확히 밝힐 것 (네덜란드) |
| 125.69 | 수용소에 사람을 구금시키는 관행을 중지하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할 것. 또한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절차보장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사법시스템의 개혁을 촉진할 것 (아르헨티나)   |
| 125.70 |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일본)   |
| 125.71 |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감찰관이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스라엘)  |
| 125.72 |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감찰관이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즉시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 (오스트리아)  |
| 125.73 | 기초적 보건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감찰관이 정치범수용소와 기타 수용소 및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시 보장할 것 (에스토니아)   |

|        |  |
|--------|--|
| 125.74 |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노동교화소 및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자유롭게 제한 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일랜드) |
| 125.75 |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케도니아)  |
| 125.76 | 모든 정치범에게 공개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고, 구금시설 내의 고문 행위를 처벌하고 방지할 것 (마케도니아)   |
| 125.77 |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관되어 있는 자를 기소하고, 로마규정을 비준할 것 (스위스)   |
| 125.78 | 반인도범죄를 포함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관되어 있는 자를 추궁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캐나다)                       |
| 125.79 | 연좌제에 기초한 보복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이미 판결이 된 가족에 대한 집단처벌을 중단할 것 (독일)   |
| 125.80 | 이웃감시제도인 인민반을 철폐하고, 공민등록과 신소제도를 폐지할 것 (캐나다)   |
| 125.81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치적 개혁을 할 것 (그리스)  |
| 125.82 | 평등의 기초 상에 모든 공민의 식량권을 보장하고, 차별적인 식량배급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 (체코)                                |
| 125.83 | 식량권 침해를 중지하고 기아와 영양부족을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 (그리스)  |

## 2. 권고 수용: 113개

|        |   |
|--------|---|
| 124.1  | 국제사회의 의무 이행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할 것 (카자흐스탄)             |
| 124.2  | 아직 체결국이 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 (볼리비아)                      |
| 124.3  | 아직 체결국이 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할 것 (차드)                            |
| 125.1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7월 서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을 비준할 것 (프랑스) |
| 124.16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과 그의 선택의정서를 서둘러 비준할 것 (가나)              |

|        |  |
|--------|--|
| 124.17 | 각종 주요 국제인권조약문서의 체결국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인권이사회의 각종 특별 절차 및 협약기구와 협력할 것 (에스토니아)  |
| 124.18 | 국제입법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인권책무를 이행할 것 (싱가폴)   |
| 124.2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권보호의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입법과 법률실천 등의 유관분야를 강화할 것 (러시아)  |
| 124.21 | 더욱더 많은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관련 법률을 공포하고, 인권을 행사하는 유관 법률 프레임을 개선할 것 (알제리아)   |
| 124.27 | 주민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국가인권보호제도를 개선할 것 (우즈베키스탄)   |
| 124.28 | 인권영역의 건설적인 협력대화를 유지할 것 (동티모르)  |
| 124.29 |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 (일본)  |
| 124.30 | 지속적으로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 인권을 보호 및 증진시킬 것.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것 (이란)   |
| 124.31 | 취약계층관련 인권, 아동권리, 여성권리, 장애인 및 노인권리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 각종 국제인권조약에 입각해 국가법률을 집행할 것 (태국)                               |
| 124.32 | 지속적으로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 (동티모르)  |
| 124.33 | 비준한 기본적 인권조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 (폴란드)  |
| 124.34 |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동, 여성 및 기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쿠바)  |
| 124.35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관련 법률을 충분히 집행할 것 (시리아)  |
| 124.36 | 새로 통과된 법률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 (동티모르)  |
| 124.37 | 국제사회, 유엔관련기구,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기타 이해관련자들과 더 많은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하고,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여 해당국의 인권상황을 더욱 개선할 것 (태국)                  |
| 124.3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더욱 노력을 강화하고,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효성 있는 협력을 전개할 것 (베트남) |
| 124.39 | 공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조직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제인권조약을 선전할 것 (볼리비아)  |

|        |  |
|--------|--|
| 124.40 | 대중들이 국제인권기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체결국인 국제인권 조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관련 출판물을 내는 등의 인권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 (말레이시아)                      |
| 124.41 | 전국적으로 각종 활동을 펼쳐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 (수단)  |
| 124.42 | 각종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방법을 취하여, 인권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것 (이디오피아)   |
| 124.43 | 정부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훈련과 교육을 진행할 것 (볼리비아)  |
| 124.44 | 법을 집행하는 관리에게 국제인권조약과 관련된 자료를 더욱 많이 제공할 것 (파키스탄)  |
| 124.45 | 국제 인도주의적 원조를 확보하여 취약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도움이 미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이디오피아)   |
| 124.46 | 인도주의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그들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주의적 원조를 확보하여 취약계층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뉴질랜드) |
| 124.47 | 인도주의 단체가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족할 수 있을 수준의 모니터링 조건을 보장할 것 (노르웨이)   |
| 124.48 |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국제조직과 지속적으로 협력 및 대화를 유지할 것 (싱가폴)  |
| 124.50 | 인권분야에서의 도전과 어려움에 맞서 유엔 및 국제조직과 협력하고 기타 국가와 이 분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 것 (알제리)  |
| 124.51 | 유엔인권매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카자흐스탄)   |
| 124.52 |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 하에 유엔인권매커니즘과 대화 및 협력을 전개할 것 (중국)   |
| 124.53 | 위생, 교육, 식량분야에서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 (부룬디)   |
| 124.55 | 세계식량기구(WFP)의 요구를 기준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노인, 여성 및 아동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방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우루과이)              |
| 124.56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과정 중 받은 권고사항들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인권관련 단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 (베트남)                                      |
| 124.57 | 검토중 제기된 모든 지적과 권고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떠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밝힐 것 (한국)   |

|         |   |
|---------|---|
| 124.61  | 협약기구 및 유엔인권이사회와 협력할 것 (튀니지)   |
| 124.6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체결국인 유엔인권조약의 각 협약기구와 건설적 협력을 유지할 것 (파키스탄)                                |
| 124.64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 (노르웨이)                                      |
| 124.65  | 유엔인권매커니즘과 협력하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접촉할 것 (폴란드)                                       |
| 124.66  | 유엔인권매커니즘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방할 것 (아르헨티나)                              |
| 124.68  | 법률과 실천에 있어 불차별원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체결국인 각종 국제인권협정을 준수할 것 (인도네시아)                          |
| 124.69  | 여러 형식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앙골라)                                       |
| 124.70  | 즉시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스라엘)   |
| 124.71  | 양성평등의 권리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인도네시아)  |
| 124.72  | 진일보된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고려하고, 여성들이 정치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 (벨로루시)                         |
| 124.73  | 여성이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직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노르웨이)                              |
| 124.74  | 여성이 정책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할 것 (남수단)   |
| 124.75  | 식량, 교육, 근로권리 측면에서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이탈리아)                                     |
| 124.76  | 여성권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베네수엘라)                                   |
| 124.105 | 여성에 대한 폭력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것 (프랑스)  |
| 124.107 | 여성을 침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마련할 것 (칠레)                    |
| 124.110 |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할 것, 특히 인권교육과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에 대한 훈련을 통해 여성과 아동 분야에 노력을 기울일 것 (이집트) |
| 124.112 | 모든 장소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을 공포하고 집행할 것 (노르웨이)   |

|         |  |
|---------|--|
| 124.113 | 사법부문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것 (나미비아)   |
| 124.114 |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질서보장의 권리를 충분히 명시할 것 (이스라엘)   |
| 124.116 | 인권 침해관련 주민들의 제소를 처리하는 국가차원의 기제를 만들 것 (러시아)   |
| 124.117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전체 주민들의 모든 기본권리 및 자유를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각종 범행, 폭력행위 및 모든 인권 침해사항 관련 가해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현상을 방지할 것 (아르헨티나) |
| 124.118 |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부룬디)   |
| 124.120 | 전국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 (베트남)   |
| 124.121 | 해당국의 사회구조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특히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정을 보호하고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 (우간다)   |
| 124.122 |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해 편리한 생활조건을 제공할 것 (남수단)  |
| 124.125 | 국민들이 쉽게 외국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인도)   |
| 124.126 | 모든 종교인들이 독립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이스라엘)   |
| 124.128 |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리의 확보를 통해, 모든 개인의 생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 (캐나다)   |
| 124.130 |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방법을 마련할 것 (인도네시아)   |
| 124.137 | 정보접근 관련 법률 통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미얀마)                              |
| 124.138 | 공민과 맞는 안전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 (니카라과)   |
| 124.141 | 어떠한 차별도 없는 식량권 및 기타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것 (스페인)   |
| 124.142 | 차별하지 않는 기초 하에 충분한 식량을 얻을 권리를 포함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 보호 및 실현할 것 (슬로베니아)  |
| 124.143 | 어떠한 제한 없이 모든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장할 것 (스위스)   |
| 124.145 | 모든 주민이 식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칠레)   |

|         |  |
|---------|--|
| 124.146 | 공적 지출에서 식량권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근 이미 개선을 이루어낸 식량 상황을 더욱 개선시킬 것 (노르웨이)                            |
| 124.147 | 식량, 건강, 물 및 위생설비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즉시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
| 124.148 |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식량생산량을 늘리고, 의료용품과 설비의 생산 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쿠바)                          |
| 124.149 |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예산 배정을 늘리고, 조선공민의 인권을 더욱 촉진, 보호할 것 (모잠비크)                            |
| 124.150 | 도농간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 (앙골라)  |
| 124.151 | 모든 이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방글라데시)                                       |
| 124.152 | 모든 공민이 공정하게 사회 및 경제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케도니아)   |
| 124.153 | 빈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항할 것 (방글라데시)   |
| 124.154 |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정하고, 아동, 여성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과 주변화 된 집단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스리랑카) |
| 124.156 | 농촌지역의 위생설비와 주택건설을 더욱 중시할 것 (중국)  |
| 124.157 |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주택의 보수 및 건설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적절한 주택권을 보장할 것 (시리아)                         |
| 124.158 | 농촌인구에 높은 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고, 충분한 문화설비를 제공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 124.159 | 주민들에게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설비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 (이집트)                                      |
| 124.160 | 모든 주민에게 높은 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남수단)   |
| 124.161 | 전국적으로 식량접근, 의료보건, 교육 및 적절한 주택 상황을 개선할 것 (나미비아)   |
| 124.162 | 아동의 교육, 영양, 기초위생보건에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조치를 취할 것 (인도)                                    |



|         |   |
|---------|---|
| 124.163 | 전국각지의 위생과 위생설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 (카자흐스탄)                                       |
| 124.164 | 기본약품 등의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가 위생부문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 (벨로루시)                    |
| 124.165 | 원거리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 (베네수엘라)   |
| 124.166 | 보건전략 (2011-2015)과 보건관련 기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란)                        |
| 124.167 | 의료종사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고립된 농촌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공민위생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것 (수단)                          |
| 124.168 |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생산보건전략 및 여성보건 관련 기타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 124.169 | 여성의 위생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산모의 사망률을 낮출 것 (방글라데시)   |
| 124.170 | 이동과 산모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여 위생시스템을 강화할 것 (우루과이)  |
| 124.171 | 빈곤한 지역의 어린이들이 교육과 보건 측면에서 도시지역과 동일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 (베네수엘라)                    |
| 124.172 | 모든 주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건강할 권리를 향유하게 하기 위해 더욱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실시 및 발전시킬 것 (쿠바)           |
| 124.173 |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주목하고 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 (방글라데시)   |
| 124.174 | 12년의 교육제도를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설비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벨라루시)                           |
| 124.175 | 보통중등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 (미얀마)  |
| 124.176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진 교수법을 도입하고, 관련 국제조직과 기타 외국과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 (이디오피아)               |
| 124.177 | 2015년 모두를 위한 교육국가행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파키스탄)   |
| 124.178 | 장애아동, 부모가 없는 아동이 충분히 건강, 교육 및 기타 사회, 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 (스리랑카)      |

|         |   |
|---------|---|
| 124.179 | 모든 수단과 자원을 제공하여 장애아동이 교육권을 향유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집트)                         |
| 124.180 | 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 (쿠바)                          |
| 124.181 |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들이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것 (중국)                   |
| 124.182 |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란)  |
| 124.183 | 경제, 상업활동 및 여행 등 더 많은 인간 대 인간의 접촉을 허용하여 국가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말레이시아)          |
| 124.18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해당국이 의미있게 해당국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을 장려할 것 (우간다) |
| 124.185 | 기타 국가와 재해리스크 관리의 경험을 공유 할 것 (니카라과)  |

### 3. 권고 부분 수용: 4개

|         |  |
|---------|--|
| 124.7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과 그의 선택의정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CPED),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및 로마규정을 비준할 것 (튀니지) |
| 124.63  | 제때 모든 협약기구의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의 약속을 이행하고, 아직 수용하지 않은 해당국을 방문하기위한 특별절차를 수용하며, 국가 법률과 국제협약상의 의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적극적으로 접촉할 것 (헝가리)                               |
| 124.67  | 인권기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접촉하며 그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할 것. 모든 사람이 각각의 인권과 기본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시에라리온)   |
| 124.115 | 형사사법제도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D)과 기타 국제인권문서 상의 의무와 일치되게 할 것 (호주)   |

#### 4. 이행가능성 지속검토: 58개

|        |  |
|--------|--|
| 124.4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 가입을 고려할 것 (이집트)   |
| 124.5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가입 여부를 고려할 것 (러시아)   |
| 124.6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CPED) 등의 국제협약을 비준하여 국가법률로 적용시킬 것 (시에라리온) |
| 124.8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CPED) 등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 (브라질)  |
| 124.9  | 앞선 권고들과 같이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 (터키)   |
| 124.10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에 가입하여 모든 구금자에 대한 고문과 기타 학대를 금지하는 행동을 즉시 취할 것 (덴마크)   |
| 124.11 |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을 표명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명확한 시한이 있는 계획을 통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의 체결국이 될 것 (영국)  |
| 124.12 | 사형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와(ICPPR-OP 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및 선택의정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포르투갈)             |
| 124.13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등의 핵심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할 것 (라트비아)  |
| 124.14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우루과이)  |
| 124.19 | 국가입법을 수정하여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게 하고, 국가인권기구(NHRI)를 설립할 것 (폴란드)  |
| 124.22 |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 (인도네시아)   |

|        |   |
|--------|---|
| 124.23 |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 (가나)   |
| 124.24 | 앞선 권고들과 같이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 (인도)  |
| 124.25 |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 (튀니지)  |
| 124.26 | 독립된 국가인권기구와 효과적인 제소기제를 설립할 것 (시에라리온)  |
| 124.49 |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 단계를 즉시 설정할 것. 특히 경내 진입 허가, 국제인권기구 및 매커니즘의 권고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대화 및 이행 등 이들 기구와 접촉을 지속할 것 (덴마크) |
| 124.54 | 국제노동기구(ILO)에 신속히 가입할 것을 고려할 것 (우루과이)  |
| 124.58 | 유엔의 각종 특별절차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 입국을 허용할 것 (터키)   |
| 124.59 |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엔의 인권 특별절차와 충분한 협력을 시작할 것 (마케도니아)   |
| 124.60 | 식량권 문제 특별보고관의 해당국 방문 요청을 고려할 것 (인도)   |
| 124.77 | 궁극적인 사형제 폐지를 위해 사형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것을 고려할 것 (나미비아)  |
| 124.78 | 사형제 폐지를 위해 사형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 (슬로바키아)   |
| 124.79 | 사형제 폐지의 첫 번째 단계로서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 (스페인)   |
| 124.80 | 사형제 폐지의 첫 번째 단계로서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 (마케도니아)   |
| 124.81 | 앞선 1차 검토에 권고했던 바와 같이 사형제 폐지의 첫 번째 단계로서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 (이탈리아)   |
| 124.82 | 사형제 폐지의 첫 번째 단계로서 사형집행과 공개처형을 중지할 것 (시에라리온)   |
| 124.83 | 사형 집행과 공개처형을 중단할 것 (터키)   |
| 124.84 | 사형을 중단하고 사법제도 내 사형을 폐지할 것 (에콰도르)  |
| 124.85 | 사형집행을 정식으로 중단할 것 (벨기에)  |
| 124.86 | 사형제 폐지를 위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사법절차가 모든 국제적 보장을 얻게 하며, 집단처벌을 폐지할 것 (코스타리카)  |
| 124.87 | 사형제 폐지를 위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동시에 공개 처형 및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처형을 중지할 것 (리투아니아)   |

|         |   |
|---------|---|
| 124.88  | 사형제 폐지의 첫 번째 단계로서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사형의 강제성을 철회할 것. 또한 형선고와 사형집행에 관한 자세한 통계치를 공개할 것 (프랑스)  |
| 124.89  | 사형제 폐지의 첫 번째 단계로서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형선고와 사형집행에 관한 자세한 통계치를 공개할 것 (헝가리)  |
| 124.90  | 사형 선고와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 (몬테네그로)   |
| 124.92  | 공개처형을 중지하고 사형 선고와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 또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 (독일)   |
| 124.9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사형제를 유지 한다면, 해당국은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경제사회이사회 1984/50 결의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와 제14조,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등의 조약들을 존중할 것 (벨기에) |
| 124.95  | 구금자를 처벌하는데 있어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 (스페인)  |
| 124.96  | 고문 및 관련 행위 사용 금지에 관한 조치를 취한 것 (보츠와나)  |
| 124.97  |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상황에서의 고문과 학대를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 (슬로바키아)   |
| 124.98  | 모든 구금자에 대한 강제노동 및 식량배급 박탈을 포함한 고문과 기타 학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투명성 있는 행동을 즉시 이행할 것 (스웨덴)   |
| 124.99  | 구금시스템 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침해 사례 등을 포함한 고문 및 기타 잔인한 대우와 관련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 (러시아)   |
| 124.100 | 여성 죄수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즉시 마련할 것 (아일랜드)  |
| 124.101 | 고문과 강제노동 혹은 식량배급과 같은 비인도 혹은 인격 모독적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모든 죄수에 제공되는 최저기준의 인도적 대우를 보장할 것 (뉴질랜드)   |
| 124.106 | 혼인 성폭행 및 구금시설에서의 성폭행에 적용되는 성폭행의 정의를 포함해 여성을 폭력하고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법률을 공포할 것 (캐나다)   |
| 124.108 | 강제낙태의 관행을 중단할 것 (캐나다)   |
| 124.109 | 각종 홍보 프로그램과 체제 및 법률 프레임의 강화를 통해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폭력 및 침해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스리랑카)  |
| 124.111 | 강제노동을 중지할 것 (칠레)  |

|         |   |
|---------|---|
| 124.119 | 폭력행위 및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히 법집행 인원과 기타 책임 부문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적시 기소와 조사를 통해, 비처벌 문제를 해결할 것. 또한 구금 중에 성적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여성 및 아동문제에 특별히 주목할 것 (에과도르)                           |
| 124.124 |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외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 혹은 비자발적 귀환해온 사람을 처벌하지 말 것 (체코)  |
| 124.127 | 양심과 신앙의 자유권 관련 입법을 개혁할 것 (러시아)  |
| 124.12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체결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18조 하의 모든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 혹은 집단, 공개 혹은 비공개로 예배, 의식, 실천 및 교리로써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에 대한 보호 및 촉진을 강화할 것 (나미비아) |
| 124.133 |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을 포함하여 독립된 신문매체 및 기타 사회매체의 설립을 허용할 것 (이스라엘)  |
| 123.134 | 인권활동가, 신문기자 및 기타 민간사회행위자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 (튀니지)   |
| 124.13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보 공간을 개방하여, 모든 주민들이 그들의 선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 (체코)  |
| 124.136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나타난 국제의무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슬로바키아)  |
| 124.139 | 중앙배급체계를 포함한 식량, 의료보건 및 위생서비스로의 접근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차별과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오스트리아)   |
| 124.140 |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방식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식량권 충족을 보장하고, 중앙배급에서 주변화 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것 (핀란드)  |



본 보고서는 제6차 KINU 통일포럼(2014.12.16) 결과를 바탕으로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한동호, 홍민, 도경옥 연구위원 등이 수정·보완 작업에 참여하였다.

제6차 KINU 통일포럼은 이금순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수암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 소장, 조정아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이규창, 한동호, 홍민, 도경옥, 김갑식, 송영훈, 홍석훈, 신종호 연구위원(이상 통일연구원)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세희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형석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통일전문위원,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등 정부관계자, 유호열 교수(고려대), 박순성 교수(동국대), 김병로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재천 교수(한동대)와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하였다.





##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2014-01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2014.6)
- 2014-02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2014.8)
- 2014-03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2014.9)
- 2014-04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2014.9)
- 2014-05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근간)
- 2014-06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2015.1)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